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42
----------	-------

발의연월일 : 2021. 12. 17.

발 의 자 : 고민정 · 김정호 · 송재호
천준호 · 오영환 · 도종환
한병도 · 김영배 · 김성주
장경태 · 김두관 · 이규민
유정주 · 이용우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시 필요한 입지 선정 컨설팅이나 종사자 교육, 평가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운영의 한계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중앙의 아동정책 지원체계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었으나 시·도 단위의 종합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아동복지 정책의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자원 및 역량에 따른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수행의 안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법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는 한편,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6호의2 신설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시·도아동권리보장원) ① 시·도지사는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시·도보장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보장원은 관할 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대상아동 및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업무 조정·연계·평가 지원
2.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업무 지원
3.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지원
4.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관련 업무 지원
5. 보장원,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복지사업 지원 및 연계체계 구축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시·도지사는 시·도보장원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보장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도보장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시·도보장원,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10조의3에 따른 시·도보장원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생략)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 13. (생략) ③ ~ ⑧ (생략) <u><신설></u>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7. ~ 13.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시·도아동권리보장원) ① 시·도지사는 통합적 아동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시·도보장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보장원은 관할 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대상아동 및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업무 조정·연
계·평가 지원
 2.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업무
지원
 3.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
센터의 업무 지원
 4.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관련 업무 지원
 5. 보장원,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시
설 등의 아동복지사업 지원
및 연계체계 구축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
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③ 시·도지사는 시·도보장원
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5조에 따른 공공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
산의 범위에서 시·도보장원의

	<u>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⑤ 시·도보장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u>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u>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① ----- ----- <u>시·도</u>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① ----- ----- ----- ----- ----- ----- ----- ----- -----

[illegible]

1. -----시 · 도보장원, 지방
자치 단체-----

2. ~ 25. (생략) ② ~ ⑦ (생략)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u><신설></u> ② · ③ (생략)	----- 2. ~ 25.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제10조의3에 따른 시·도보 장원</u> ② · ③ (현행과 같음)
--	--